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용범의원 대표발의】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95호로 2014년 4월 8일 김용범 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에 의정활동
보고회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운영 원칙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자치회관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별 자율적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이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에 의정활동 보고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선출직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인 의정활동 보고회를 정치적 이용목적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도는 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1996.3.28. 선고 96헌마18 결정)한 바 있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에서도 자치회관에서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이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